

초안: 칼링포드 침례교회 헌법

교회 회원 회의에서 승인된 날짜: __ / __ / __

(칼링포드 침례교회 정책 및 절차와 함께 읽어야 함)

1) **교회의 기초** 칼링포드 침례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증명하는 회원으로 구성되며, 뉴사우스웨일스 침례교 연합 법인법 1919 (사적 법률) 및 1979 년 뉴사우스웨일스 침례교 연합 총회에서 강화되고 2002 년 및 2003 년에 수정된 신념 선언을 확인합니다.

2) **교회의 목적** 교회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삼고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여 복음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3) 교회의 운영

1.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 성령의 인도와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행동합니다.
2. 교회는 뉴사우스웨일스 및 ACT 침례교 협회의 회원이 되고 이를 지원합니다.
3. 교회는 회중 정부의 원칙에 따라 운영됩니다. 최종 의사 결정 권한은 교회 회원에게 있으며, 교회 정책이나 절차에 따라 위임되거나 승인된 결정은 제외됩니다.
4. 교회는 성경의 리더십 원칙을 충분히 고려하여 리더를 임명하며, 임명된 리더는 교회 회원으로서 교회 회원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5. 리더십 팀은 담임 목사, 집사, 사역 위원회(사역 리더 팀)로 구성되며, 연례 교회 회의 또는 특별 교회 회의에서 임명됩니다.
 - a) 목사는 교회의 일반적인 목회 감독을 책임지며, 담임 목사는 교회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목사는 이를 위한 특별 교회 회의에서 임명됩니다. 교회 회의는 모든 목사 임명에 있어 교회 정책을 따릅니다.
 - b) 집사는 교회 회원으로 최소 6 개월 이상 활동하고 완전 침수로 세례를 받은 자여야 합니다. 집사는 교회의 정책, 절차 및 전략 계획의 구현을 감독하고 관리합니다.
 - c) 사역 위원회는 교회의 사역을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교회 서기 또는 임명된 대표가 모든 사역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며, 사역 위원회 구성원은 매 분기 회의에 대한 서면 보고서와 연례 교회 보고서에 포함될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4. 회원 자격

교회 회원은 다음과 같은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 1)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정한 신앙 고백을 증명하고 완전 침수로 세례를 받았거나, 완전 침수로 침례를 받지 않았더라도 신앙 선언을 지키기로 동의하는 사람.
- 2) 기도, 성경 공부, 재정 지원 및 교회 서비스, 사역 및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석함으로써 이 교회의 삶과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

5. 교회 회원 회의

1. 교회 회원 회의는 매년 최소 두 번 열리며, 그 중 하나는 연례 총회로 진행됩니다.
2. 추가 교회 회원 회의는 집사와 목사에 의해 소집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회의는 특정 목적을 위해 호출되며, 서면 통지를 받은 사항만을 고려합니다. 또한, 교회 회원은 사역 위원회에 사항을 제기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이 교회 회의에서 논의되어야 할 경우, 사역 위원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하여 회원은: a) 해당 사항이 교회 회의의 안건에 포함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b) 교회 회의에서 논의할 안건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모든 교회 회원 회의에 대한 통지는 회의 이전 2 주 동안에 교회 예배 중에 공지해야 합니다.

4. 교회 서기 또는 임명된 대표는 연례 교회 회의에 연례 보고서와 연례 재정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는 교회 재정 정책에 따라야 합니다.
5. 모든 교회 회원 회의의 정족수는 현재 활동 중인 모든 회원의 25%로 설정됩니다. 정족수 산정 시, 지역을 벗어난 회원, 병원에 입원한 회원, 또는 결석 회원 명단에 있는 회원은 현재 및 활동 중인 회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6. 정족수 부족으로 인해 교회 회원 회의를 다시 소집해야 하는 경우, 재소집된 회의의 정족수는 현재 회원의 15%로 설정됩니다.
7. 비회원은 교회 회원 회의의 전부 또는 일부에 참석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목사 호출이나 재산 매매와 관련된 권고 사항을 제외한 모든 권고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8. 교회 회의에 참석한 현재 활동 중인 회원만이 목사 호출이나 재산 문제와 관련된 모든 권고 사항에 대해 투표할 수 있습니다.

6. 범죄 및 분쟁

- 1)교회는 평화의 문화를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유지하며, 평화에 대한 헌신이 제자됨과 제자를 만드는 데 근본적임을 인정합니다.
- 2)교회는 그 삶에서 의견 불일치와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 3)교회 회원은 용서, 평화, 회복을 가져오는 것을 목표로 하여 교회의 갈등 해결 정책과 절차를 따르기로 동의합니다.

7. 재산 소유권 및 해산

- 1)모든 교회 재산의 수탁자는 NSW 침례교회 재산 신탁(Baptist Churches of NSW Property Trust)입니다.
- 2)집사들은 교회의 자산(건물 및 내용물), 근로자 보상(직원 및 자원봉사자), 공공 책임, 전문적 배상 및 필요한 기타 보험과 관련하여 적절한 보험을 마련해야 합니다. 보험은 매년 검토되어야 합니다.
- 3)교회의 자산과 수익은 복음을 나누는 것을 통해 하나님의 왕국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 4)교회가 해산될 경우, 해산 후 모든 채무와 책임을 충족한 후 남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a) NSW 침례교회 재산 신탁법(Baptist Churches of NSW Property Trust Act 1984)에 따라 신탁으로 보유된 재산의 경우, 해당 법(제 29 조)에 따라 처리되며, 이 법은 교회 회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어떤 부분도 분배되지 않도록 규정합니다.
 - b) 모든 다른 경우에는 Baptist Churches of NSW & ACT 에 이전되거나 자산과 수익의 분배를 금지하는 규칙을 가진 유사한 목적의 다른 조직에 이전되어야 하며, 해당 조직은 소득세 면제를 받아야 합니다.

8. 헌법 변경

- 1)이 헌법에 대한 변경은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회원의 75% 이상의 찬성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해당 목적으로 소집된 교회 회원 회의에서 투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2)이러한 회의의 정족수는 현재 활동 중인 회원의 50%로 설정되며, 지역을 벗어난 회원, 병원에 입원한 회원, 또는 결석 회원 명단에 있는 회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3)헌법 변경에 대한 제안은 서면으로 교회 서기 또는 임명된 대표에게 통지해야 하며, 제안된 변경 사항의 세부 사항은 회의 일자 한 달 전까지 모든 회원에게 배포되어야 합니다.
- 4)교회 서기 또는 임명된 대표는 집사와 협의하여 제안된 변경 사항이 NSW 및 ACT 침례교회 협회와의 제휴 요건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